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1.7월]

1. 고려인삼엑기스 제품 수출시 규격기준 적용관련

- 대일 수출되는 고려인삼(홍삼) 엑기스 제품의 경우 현재, 일본 수입신고 시 청량음료수로 분류되어 청량음료수 규격을 적용받고 있으나, 청량음료 규격의 경우 세균수 규제 등 검역통관이 까다로운 편으로 향후 수입 시에는 청량음료수가 아닌 고려인삼 제품으로 수입신고를 통한 통관 검역 원활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함

2. 고려인삼엑기스 제품의 통관시 분류

- 고려인삼엑기스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청량음료수로 분류되어 해당 규격기준치에 맞는 납, 비소, 훈탁, 세균수 등의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되고 있음
- 주요 포인트
 - 후생노동성 검역소가 지정한 고려인삼엑기스 제품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식품분류 번호는 G810201 로 분류됨
 - 해당 엑기스 제품의 음용방법이 물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청량음료수로 분류됨. 청량음료수의 경우 H1으로 시작되는 분류코드임

3. 고려인삼 엑기스 제품에 대한 상세 자문 내용

- 일본에도 인삼엑기스 제품과 유사한 식품이 있으나 청량음료수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
- 해당 유사 제품은 직접 먹거나, 물에 녹여서 먹는 경우도 있으며, 분류상은 과실엑기스로 분류됨

https://www.mikiprunec.co.jp/mikiprunec_extract/

- 주요 용도가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먹는 제품일 경우라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검역소에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것을 상정하는 상품일 경우 청량음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고려인삼 엑기스 제품 관련 상정되는 수입식품 품목코드(G810201)
 - 검역소가 분류하는 식품코드로 세관 관세번호와는 다른 번호로서 건강식품> 생약적인 것> 고려인삼(분말청량음료는 제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 청량음료수에 해당될 경우 H1으로 시작되는 코드로 분류됨
- 수입자의 설명이나 제시 자료(보충설명서, 제품 표기 등)에 의해 판단됨으로 사전에 적정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통관업체가 검역관에게 잘못된 설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가 필요시 됨
- 수입자가 청량음료수 이외의 고려인삼 제품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검역소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 고려인삼(G810201) 분류로 인한 장점
 - 본래의 고려인삼 제품으로 품목 판정을 통한 판매시 우위성 확보
 - 일본의 청량음료수 식품규격기준이 엄격하여, 통관에 애로사항 발생
 - 고려인삼 제품으로 통관시 별도 검사 없이 통관 가능함
- 고려인삼 제품의 관세번호 및 관세율

관세번호	제품 내용	WTO협정세율(%)	비 고
1302.19.239	인삼 엑기스	무세	기타 식물성 액즙 및 엑기스
2106.90.292	인삼 분말차	12	무가당, 인삼이 포함된 것
2202.99.200	인삼차(액상)	9.6	무가당, 스틱형 액상차 등

※ 한국은 WTO가맹국임에 따라 WTO협정세율이 우선적용됨

※ 세관의 관세분류와 식품검역소의 식품분류 코드는 일치하지 않으며, 각 기관별 견해 차이가 날수 있음

<참고사항>

■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일본)

(1) 일반규격

1. 혼탁(원재료로서 이용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성분, 착향 또는 착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멸한 미생물(제품 원재료에 혼입이 부득이한 것에 한함)에 기인하는 혼탁 제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침전물(원재료로서 이용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성분, 착향 또는 착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멸한 미생물(제품 원재료에 혼입이 부득이한 것에 한함)에 기인하는 침전물 제외) 또는 고형의 이물(원재료로서 이용되는 식물인 고형물로 그 용량 백분율이 30% 이하인 것은 제외)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금속제 용기포장된 제품의 주석 함유량은 150.0 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만 한다.

<참고: 일본 후생노동성 청량음료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content/000420821.pdf>

2. 시사점

- 수입자가 청량음료수 이외의 고려인삼 제품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검역소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에 희석하여 마시지 않을 경우 고려인삼제품으로 수입신고를 추진함으로써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1. 통관동향 등 이슈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각 검역소에 통보한 2021.8.26자 문서에 의하면 한국산 깻잎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를 과거 1년간의 검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검사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2. 변동사항

- 그동안 30% 모니터링 검사강화를 실시해온 Tetraconazole 성분에 대해 검사강화를 해제한다고 통보함
 - ※ 동성분은 2020.8.16부터 검사강화되어 왔으며 1년간 검사결과 무위반 되었기에 금번 해제조치됨
- 현재, 들깻잎에 남아있는 모니터링 검사강화 성분은 별도 없으나, 인독사카브 및 파클로부트라졸 2개 성분이 명령검사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대일 수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

3. 기타 주의사항 등

- 한국산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신선고추의 간이 가공품에 해당되어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 강화(전체 수입건수의 30%) 상태로 주의 필요함

위반공표일 (통보일)	품명	수량 (kg)	농 약 검 출 (ppm)		일본기준	한국기준
			성분명	검출치		
2021.01.15.	들깻잎	100	Indoxacarb	0.02	0.01	20.0
2021.01.19.	꽃고추	520	Propiconazole	0.02	0.01	1.0
2021.01.22.	꽃고추	790	Hexaconazole	0.07	0.01	0.3
2021.03.17.	꽃고추	3,000	Tricyclazole	0.06	0.01	0.01
2021.03.17.	홍고추	100	Tetraconazole	0.4	0.3	1.0
2021.04.08.	홍고추	90	Hexaconazole	0.20	0.01	0.3
2021.04.13.	참외	510	Chlorfenapyr	0.02	0.01	0.5
2021.05.20.	꽃고추	2,700	Hexaconazole	0.03	0.01	0.3
2021.05.24.	꽃고추	1,500	Tebufenpyrad	0.04	0.01	0.5
2021.06.21. (2021.06.16.)	참외	450	Procymidone	0.03	0.01	0.01
2021.06.21. (2021.06.18.)	참외	1,846	Chlorfenapyr	0.02	0.01	0.5
2021.06.24.	고춧가루	45	Propiconazole	0.06	0.01	1.0

(2021.06.22.)						
2021.06.30.	꽃고춧가루	176	Fluquinconazole	0.02	0.01	0.7
2021.8.11	들깨잎가루	6	Paclobutrazol	0.05	0.01	
계	14회 위반	(들깨잎2, 꽃고추5, 홍고추2, 참외3, 고춧가루1, 꽃고춧가루1회 위반)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8월 최신자료 포함)

- 들깨잎 가루 잔류농약 위반 사례
 - 한국산 들깨잎 가루(파우더)에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정도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기준치 위반 사례가 1건 발생함
 - 위반품목 : 가공 들깨잎 가루(파우더)
 - 위반 성분 :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0.05ppm(기준치: 0.01ppm)
- 위반발표일 8.11
- 수산물 및 식용원재료에서 위반 사례 발생
 - 냉동 구운 붕장어
 - 대장균균 양성위반(기준치 음성), 세균수 1.6×10^5 /g(기준치 10만/g)
 - 카라기난(해조류 추출물)
 - 순도시험(나트륨) 부적(1.8%이하)
 - 대게조림
 - 대장균균 양성위반(기준치 음성) 및 세균수 8.3×10^5 /g(기준치 10만/g당)

** 자료원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2. 시사점

- 금번 위반된 들깨잎 가루(파우더)의 경우 한국산 신선들깨잎에 대해 명령검사가 발동된 성분으로 금번 해당 제품은 신선들깨잎의 간이가공품에 해당되어 명령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검사 실시됨
- 신선들깨잎의 경우 금번 위반된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성분 이외에도 인독사카브(Indoxacarb) 성분이 이미 명령검사로 지정되어 있어 대일 수출시 주의가 필요시 됨

3.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 7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70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7월중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냉동구운붕장에서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 양성으로 1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사례가 12건(17.1%),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부적합, 첨가물 위반이 9건(12.9%),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균 검출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39건(55.7%),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8건(11.4%) 등으로 나타나 여름철 기온상승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절반이상을 차지함

4.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7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2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27.9%를 차지함. 냉동장어 등에서 대장균 양성 등 10건, 냉동브로콜리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1건 발생함.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미국산은 비타민류 등 건강보조식품에서 첨가물 위반이 4건 발생하였으며, 냉동케이크에서 세균수 초과되는 위생위반이 2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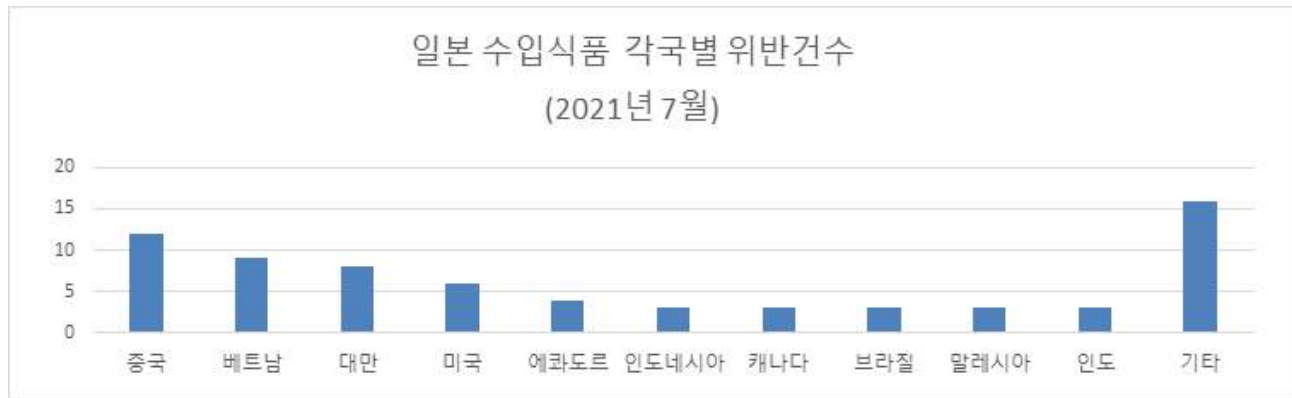
○ 대만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기타 분말청량음료에서 대장균균 양성, 어묵제품류에서 대장균균 양성 5건 등 위생위반이 8건이 발생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신선 도리안 과실류등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3건, 냉동 새우류에서 대장균 양성등의 위생위반이 5건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등	아플라톡 신	위생	첨가물	기타
중국	12	27.9	1	1	10		
베트남	9	20.9	3		5		1
대만	8	18.6			8		
미국	6	14.0			2	4	
에콰도르	4	9.3	4				
인도네시아	3	7.0		1	1	1	
캐나다	3	7.0			3		
브라질	3	7.0			3		
말레이시아	3	7.0				3	
인도	3	7.0	1	1		1	
기타	16	37.2	3	5	7		1
합 계	70	100.0	12.0	8.0	39.0	9.0	2.0
비율(%)			17.1	11.4	55.7	12.9	2.9